

◆ 제 3 장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제1절 SWOT분석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기본구상

제4절 기본계획



제3장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제1절 SWOT분석

1. SWOT 분석

1) 강점

- 울산광역시의 대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입지
- 높은 이용률만큼 이용자들의 시설개선 및 공간확장에 대한 높은 열망
- 봉사대상인구의 증가
- 인근 울산시립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2) 약점

- 한정된 대상지 현황
- 공원 부지에 위치
- 공사 중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발생

3) 기회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복합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지역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 선진국형 도서관으로서의 지향 가능
- 지하공간 활용으로 지상의 자연녹지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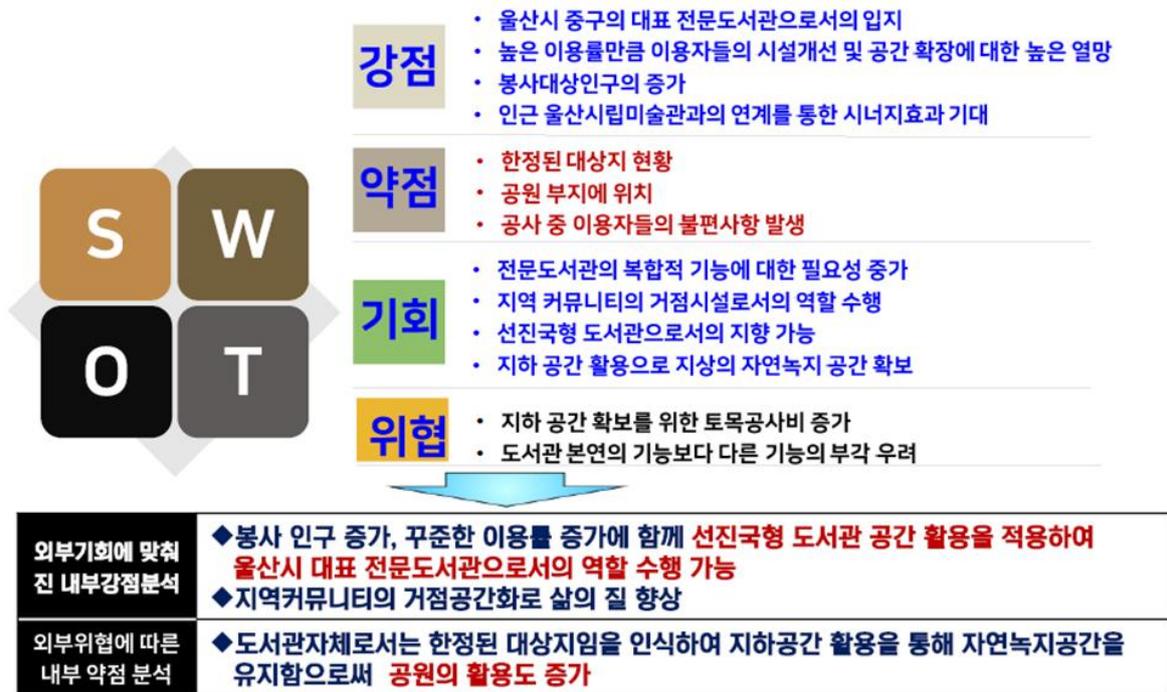
4) 위협

-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한 토목공사비 증가
- 도서관 본연의 기능보다 다른 기능(미술관 부속시설)의 부각 우려

2. 대응전략

외부기회에 맞춰진 내부 강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 • 봉사인구 증가, 꾸준한 이용률 증가와 함께 선진국형 도서관 공간 활용을 적용하여 울산시 대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외부위협에 따른 내부 약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대상지임을 인식하여, 지하 및 옥상 공간 활용을 통해 자연녹지공간을 확보 및 유지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제공, 주변 공원 활용도 증가

[그림 3-1] SWOT분석을 통한 건립 방향 설정



제2절 수요수정

1. 개요

1) 도입시설의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별표 1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크게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등 6개로 구분됨
- 본 사업의 주요시설 용도는 도서관으로 분류체계에 따르면 “도서관”에 해당됨

[표 3-1] 문화시설의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1.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9. 4. 16.> 편집

2) 수요추정 방법

-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추정 기법은 크게 정량적 기법, 정성적 기법, 정량적·정성적 기법을 결합한 기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2] 수요추정 기법의 개요

예측기법		예측방법	적용가능 사업유형	비고
정량적 기법	이동평균법	• 과거 시계열 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출평균하여 미래수요 예측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과거 이용객 자료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자료의 패턴에 크게 의존	
	지수평활법	• 최근 관측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 하도록 과거의 관측값들을 지수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미래수요 예측		
	추세조정법	• 시계열에 포함된 기본패턴들을 네 가지 변동(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변동)으로 분해하여, 각 성분을 개별 예측한 후 이들의 재합산을 통해 미래의 시계열 예측		
	ARIMA (박스-젠킨스법)	•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화시킨 후 AR모형(자기회귀모형)과 MA모형(이동평균모형)을 결합하여 적용		
	회귀분석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내어 미래 예측		
	중력모형	• 거리나 시간이 이용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	유사시설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정성적 기법	시나리오설정법	• 수요의 성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 예측	과거자료나 유사 시설 실적이 없는 경우 주로 적용	○
	델파이 기법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조직적 접근 방법		
결합기법	• 2개 이상의 정량적 모형 또는 정량적 모형과 정성적 모형을 결합 적용하여 미래 수요 예측	모든 유형의 사업	○	
수요조사	•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	모든 유형의 사업		
간편법	• 유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요 규모 추정	모든 유형의 사업	○	

- 자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2),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1

- 상기와 같이 다양한 수요 추정기법 중 본 연구의 문화시설에 적용가능한 수요 추정기법은 중력모형, 델파이기법, 결합기법 및 간편법 등임

- ① 중력모형 : 해당 사업에 대한 과거 이용객 자료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나,

반드시 유사시설에 대한 이용객 실적이 있어야 적용 가능하며, 유사시설에 따라 수요추정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유사시설의 선정이 매우 중요

- ② 델파이기법 : 과거이용객 자료나 유사시설물 이용객 실적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나 전문가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 수요추정 결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수요 추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책임감있게 조사에 임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③ 결합기법 : 과거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정량적 기법과 연구자 또는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는 정성적 기법을 혼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
- ④ 간편법 : 위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편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에서는 수요예측 방법으로 수요기준과 공급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추정방법을 제시함

-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다변량 회귀수요모형, 중력모형, 선형 시스템 분석 등
- 공급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공간 원단위, 시설 원단위, 단위시설 원단위를 이용하는 방법 등

○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2015)」는 문화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은 간편법 적용을 권고함

○ 각 지침에 따르면 수요예측의 대상이 되는 공간, 시설, 단위시설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한 원단위를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수요 추정기법 가운데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사업의 수요추정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수요 추정기법으로 “중력모형”과 “간편법”을 통하여 수요추정을 실시함

2. 수요추정

1) 중력모형

(1) 추정식

- 중력모형(gravity model)이란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을 모형화한 것으로, 인간의 공간적 이동행태가 뉴턴의 중력법칙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임
 - 즉 두 물체 간의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원용하여 대상 시설의 이용인원, 두 장소 간의 교통량 교류, 대상점포의 가능매상고 등을 추계하는 방법임
 - 최근 수행된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중력모형이 거의 적용되고 있음

- 중력모형의 구체적인 방법론 및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기준연도의 추계인구와 유사시설 평균 이용인원을 바탕으로 이용비율을 산출
 - 조사 대상사업이 특별하여 국내·외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유사사례가 없어, 유사사례가 아닌 시설을 기준으로 이 분석을 적용할 경우 해당 수요는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사한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② 이를 평가대상 문화시설에 적용하여 이용객수를 추계
 -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인구대비 몇 %가 평가대상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를 추정
 - 중력모형에서 수요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 여기서는 평가대상 시설의 규모, 즉, 이용인원을 흡인하는 규모에 비례하도록 설정함

-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A = \Sigma a \left[P_i \cdot \frac{1}{r_i^2} \right]$$

여기서, A : 평가대상 시설의 평균 이용인원

P_i : 각 지역의 인구

r_i : 평가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한 거리

a : 평가대상 시설의 거리를 감안한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2) 시설개요

-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 없어 관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유사규모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시설 면적 및 연도별 이용자 등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시설의 수요를 추정함
 - 유사규모 범위 설정 : 연면적 2,500~4,500㎡
 - 유사규모 도서관 :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앙도서관, 울주도서관, 천상도서관

[표 3-3] 유사 규모 도서관 현황

구 분		개관년월	연면적	이용객수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남구	남부 도서관	1989.3.29	4,479㎡ (지하1, 지상3)	960,026	882,201	742,248	861,492
동구	동부 도서관	1992.3.5	3,375㎡ (지하1, 지상3)	268,785	343,107	425,477	345,790
북구	중앙 도서관	2008.5.1	2,447㎡ (지하1, 지상3)	322,466	303,673	310,185	312,108
울주군	울주 도서관	1991.10.11	4,544㎡ (지상3)	275,496	242,728	198,462	238,895
	천상 도서관	2019.7.25	2,990㎡ (지상3)	-	-	-	-

- 이용객 자료 : 울산통계연보

- 관내 유사규모의 도서관은 유사규모 대비 개관연도에 따른 이용자수의 차이가 있으며, 울주군 천상도서관은 최근에 개관한 관계로 이용자수에 대한 자료가 없음

-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규모는 3,000㎡(지하층 제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추정할 유사규모 도서관은 개관 후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북구 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함

[표 3-4]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규모 및 공간구성(안)

구 분	연면적	주요시설	비 고
지하 1,2층	3,500㎡	기계실, 수장고 및 주차장(시립미술관 연계)	
지상 1층	1,500㎡	미술도서관, 전시실, 창작공간 및 디지털 미술관	미술전문
지상 2층	1,500㎡	일반도서관, 강의실, 전시실 및 커피숍	일반도서관

- 한편 영향권 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거점의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의 각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점은 도서관이 위치한 「북구 연암동」으로 함
 - 울산광역시는 4개구와 1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별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석대상인 북구도 공공도서관이 7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 영향권을 북구로 한정하여 분석함
- 각 거점에서 도서관까지의 이동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제일 짧은 이동거리이며, 최단 이동거리는 네이버지도(map.naver.com)에서 검색하여 구함
- 인구정보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의 인구통계(2019년 9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함(외국인 포함)
 - 준거시설인 북구 각 지역에서 중앙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이용인원 비율(a)을 구한 결과 : 5.8351
 - 3개년 도서관 평균 이용자수(A_R) : 312,108명
 - 각 지역별 인구와 거리의 제곱비의 합 ($\sum P_i/r_i^2$) : 53,488
 - 이용인원 비율(a) : 5.8351

$$= A_R / (\sum P_i \cdot \frac{1}{r_i^2}) = 312108/53,488$$

○ 한편, 중앙도서관의 이용인원 비율(α)로부터 구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이용수요(A'_T)를 구한 결과 : 736,401명

- 각 지역별 인구와 거리의 제곱비의 합 ($\sum P_i/r_i^2$) : 126,202

- 이용수요(A'_T) : 736,401

$$= A_R / (\sum P_i \cdot \frac{1}{r_i^2}) = 5.8351 \times 126,202$$

[표 3-5] 인구 및 거리 현황

북구중앙도서관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동명	인구 (명)	최단 거리 (km)	P_i/r_i^2	지역	인구 (명)	최단 거리 (km)	P_i/r_i^2		
북구	농소1동	38,421	5.25	1,394	중구	학성동	10,653	2.08	2,462
	농소2동	40,515	7.01	824		반구1동	18,280	3.17	1,819
	농소3동	40,247	6.69	899		반구2동	9,307	2.38	1,643
	강동동	16,102	9.32	185		복산1동	5,200	1.51	2,281
	효문동	30,782	1.21	21,025		복산2동	11,706	1.91	3,209
	송정동	30,904	1.04	28,572		중앙동	14,366	0.5	57,464
	양정동	10,545	5.22	387		우정동	20,840	0.8	32,563
	염포동	10,710	7.29	202		태화동	34,787	1.57	14,113
						다운동	24,631	4.74	1,096
						병영1동	23,490	2.82	2,954
				병영2동		21,307	4.16	1,231	
				약사동		11,203	2.62	1,632	
				성안동		21,513	2.40	3,735	
합계	8개동	218,226		53,488	합계	13개동	227,283		126,202
이용비율	$\alpha = A_R / (\sum P_i \cdot \frac{1}{r_i^2})$		5.8351	이용수요	$A'_T = A_R / (\sum P_i \cdot \frac{1}{r_i^2})$		736,401		

- 인구수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통계자료

(3) 수요추정

○ 준거시설인 북구중앙도서관과 본 사업의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은 시설면적에서 같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규모변수를 도입하여 대안별 도서관 이용수요를 추정하도록 함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이용수요(A_s) : $A_s = S_c \times A'_T$

(S_c : 규모변수, A'_T : 준거시설의 이용비율로부터 구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이용수요)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건립규모는 총 6개 대안으로 구성하였으며, 북구중앙도서관의 연면적 기준으로 대안별 규모변수는 다음과 같음

[표 3-6] 사업대안별 규모변수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북구중앙도서관 연면적(㎡)	2,447	2,447	2,447	2,447	2,447	2,447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사업대안별 연면적(㎡)	2,500	2,800	3,000	3,300	3,500	4,000
규모변수(S_c)	1.02	1.14	1.23	1.35	1.43	1.63

주) 사업대안별 연면적 : 지하 및 주차장 면적 제외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사업대안별 연간 이용자 수요추정 결과는, 연간 751,129명에서 1,200,334명으로 추정됨

- 울산광역시 계획규모(3,000㎡)로 건립될 경우, 이용객은 연간 905,773명으로 추정됨

[표 3-7] 사업대안별 수요추정 결과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이용수요(A'_T , 명/년)	736,401	736,401	736,401	736,401	736,401	736,401
규모변수(S_c)	1.02	1.14	1.23	1.35	1.43	1.63
최종 이용수요(A_s , 명/년)	751,129	839,497	905,773	994,141	1,053,053	1,200,334

2) 간편법

(1) 추정식

- 문화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복잡한 수요 예측기법보다 유사시설에서의 이용객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간편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며, 간편법으로 수요를 추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해당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사업
 - 가급적 해당사업과 유사한 입지에 위치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사사례 중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객의 증감추세 또는 답보 추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간편법에 의한 수요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N_T = N_B \times \frac{S_T}{S_B}$$

여기서, N_T : 수요 예측 대상 사업시설의 이용객수

N_B : 수요 예측 대상 사업시설의 규모

S_T : 유사 유형 사업 사례시설의 이용객수

S_B : 유사 유형 사업 사례시설의 규모

(2)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

- 앞서 중력모형에서와 같이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유사규모의 도서관을 유사사례로 선정하고 간편법을 적용함
 - 유사사례 도서관 중에서 이용객 자료가 없는 울주군 천상도서관을 제외한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함
 - 또한 개관 후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도서관의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함
- 관내 4개 시설에 대하여 간편법으로 수요를 추정한 결과 각 시설의 이용자수 및 규모변수에 따라 추정된 수요값은 차이가 있음
 - 이에 4개 시설 중 규모변수의 변동 폭(0.56~0.89)이 가장 작은 남부도서관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요값을 간편법으로 추정한 수요값으로 선택함

[표 3-8] 사업대안별 규모변수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연면적(㎡)	2,500	2,800	3,000	3,300	3,500	4,000
	남부 도서관	연면적(㎡)	4,479	4,479	4,479	4,479	4,479
	규모변수(S_c)	0.56	0.63	0.67	0.74	0.78	0.89
	이용자수	861,492	861,492	861,492	861,492	861,492	861,492
	추정결과	482,436	542,740	577,200	637,504	671,964	766,728
동부 도서관	연면적(㎡)	3,375	3,375	3,375	3,375	3,375	3,375
	규모변수(S_c)	0.74	0.83	0.89	0.98	1.04	1.16
	이용자수	345,790	345,790	345,790	345,790	345,790	345,790
	추정결과	255,885	287,006	307,753	338,874	359,622	401,116
중앙 도서관	연면적(㎡)	2,447	2,447	2,447	2,447	2,447	2,447
	규모변수(S_c)	1.02	1.14	1.23	1.35	1.43	1.63
	이용자수	312,108	312,108	312,108	312,108	312,108	312,108
	추정결과	318,350	355,803	383,893	421,346	446,314	508,736
울주 도서관	연면적(㎡)	4,544	4,544	4,544	4,544	4,544	4,544
	규모변수(S_c)	0.55	0.62	0.66	0.73	0.77	0.88
	이용자수	238,895	238,895	238,895	238,895	238,895	238,895
	추정결과	131,392	148,115	157,671	174,393	183,949	210,228

주) 이용객 자료 : 울산통계연보, 이용자수 : 3개년 평균

3) 최종수요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의 이용자 수요는 상기 2가지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수요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며, 그 결과 대안별 도서관 이용자 수요는 연간 최소 616,783명에서 최대 983,531명으로 추정됨
- 울산광역시 계획규모(3,000㎡)로 건립될 경우, 이용객은 연간 741,487명으로 추정됨

[표 3-9]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사업대안별 이용수요 추정 결과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연면적(㎡)	2,500	2,800	3,000	3,300	3,500	4,000
중력모형	751,129	839,497	905,773	994,141	1,053,053	1,200,334
간편법	482,436	542,740	577,200	637,504	671,964	766,728
평 균	616,783	691,119	741,487	815,823	862,509	983,531

제3절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 비전

- 울산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비전을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 울산시민의 요구, 울산시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민국 최고 원도심 문화예술 Complex 구현』으로 정함
 - 대한민국 최고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건립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추구해야 할 목표 설정
 - 원도심 : 도서관이 자리 잡은 입지적 특징을 나타내며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와 예술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
 - 문화예술 Complex : 울산읍성 터에 자리 잡은 본 도서관은 울산동헌 및 내아, 객사, 울산시립미술관과 연계되는 문화예술 Complex로 조성

2) 목표

- 본 과업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함
 - 울산시 문화예술의 과거·현재·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조성 : 다량의 문화예술전문서적을 보관하고 이를 울산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며, 지역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울산시의 미래 문화예술을 짚어질 어린이 세대에게 문화예술을 경험케 하는 공간으로 조성
 - 울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조성 : 울산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립미술관이 조성될 정도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통해 울산시민이 보다 더 문화적 삶을 향유케 하는 공간으로 조성
 -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조성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는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적극 건립하는 추세임. 문화예술전문도서관과 울산시립미술관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조성

3) 추진전략

-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연계전략 : 울산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시설배치 및 프로그램 마련
 - 융복합 전략 : 도서관 기능, 전시 기능,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창작 기능이 융복합된 기능 구축
 - 원도심 활성화 전략 : 문화와 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능 수행

<그림 3-2>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울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도서관 대한민국 최고 원도심 문화예술 Complex 구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시 문화예술의 과거·현재·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조성 울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조성
추 진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전략 : 울산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시설배치 및 프로그램 마련 융복합 전략 : 도서관 기능, 전시 기능,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창작 기능이 융복합된 기능 구축 원도심 활성화 전략 : 문화와 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능 수행

2. 사업부지 연왕

1) 사업부지 일대

- 사업부지가 위치한 북정동 58-8번지 일대는 울산읍성이 있던 곳으로 오랫동안 울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던 곳임. 현재에도 울산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객사(복원 예정) 등이 자리 잡고 있음. 최근 사업부지와 인접한 부지에 울산시립미술관이 건립 진행 중임
- 사업부지 일대는 중구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속해 역사·문화공원(북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동편으로 중구B-05지구와 서편으로 중구B-03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중구B-04지구 북쪽으로 우정혁신도시가 조성 중임

<그림 3-3> 사업부지 일대 현황



2) 사업부지

- 사업부지는 북정공원으로 개발되는 구역에 속해 <울산동헌 및 내아>와 <울산시립미술관(조성 중)>과 접하여 북쪽에 위치함. 대략적인 위치만 정해져 있어 사업부지를 북정공원 조성 구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확보해야 함.

- 현재 사업부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B-04지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도서관 건립에 영향을 미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중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

- 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

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시설규모 검토

1) 법률적 검토

- 건립 예정 부지는 중구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건립 예정부지는 중구B-04지구의 공원용지로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울산광역시. 2017. 『중구B-04지구 지구단위계획』)
 - 용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른 역사·문화공원에 한하며,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함
 - 건폐율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며,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3호에 역사·문화공원은 “지역 특성상 역사와 문화자원을 공존시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됨.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역사·문화공원에 적합한 시설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3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개선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2.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나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3. 역사·문화공원: 지역 특성상 역사와 문화자원을 공존시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한편, 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이 가능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영 별표 5 제1호·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 호 가목·금융업소·사무소 및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의 차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설비에 한한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가 적용됨. 그러나 사업부지는 현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울산동헌 및 내아>와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울산향교>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함.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본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별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상변경 심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최근에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한 울산시립미술관의 사례를 참조할 때 지상 2층 이층 이하로 건립하여야 할 판단됨

2) 경관적 검토

○ 인접한 <울산동헌 및 내아>와 <울산시립미술관>은 모두 충분한 오픈 스페

이스를 갖추고 있음

- 본 사업부지에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전문도서관>도 인접한 <울산동헌 및 내아>, <울산시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다른 건축물과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쾌적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울산시립미술관의 건폐율은 20%임)

3) 수요적 검토

- 도서관은 자료이용 부문, 문화교육 부문, 업무관리 부문, 공용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됨. 본 도서관은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문화교육 부문이 특화되어 많은 면적을 차지함. 또한 본 도서관은 인접한 울산시립미술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울산시립미술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주차면 100면 확보). 이에 주차장이 속하는 기타 부문이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많은 면적을 차지함
- 앞의 수요추정 결과 본 도서관의 면적으로 3,000㎡가 도출되었음. 본 도서관의 특성상, 문화교육 부문과 기타 부문을 제외한 자료이용 부문, 업무관리 부문, 공용 부문의 합이 대략 3,000㎡이면 적절한 시설규모로 파악됨

4) 적정 시설규모 도출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적정 시설규모를 지상2층/지하2층의 연면적 15,100㎡로 도출함. 지하1층은 5,600㎡, 지하2층은 5,780㎡로 합이 11,380㎡로 지상층에 비해 넓은데, 이는 울산시립미술관에 부족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 지상1층은 1,900㎡, 지상2층은 1,820㎡로 합이 3,720㎡로 본 도서관이 문화교육 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수요추정에 적절한 규모로 판단됨
- 본 도서관은 부지면적 8,930㎡에 지상층 면적 3,720㎡로 건폐율 21.28%, 용적률 41.66%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60% 이하)과 용적률(200% 이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확보함

<표 3-10>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시설규모

구분	면적	비고
지상2층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8,930㎡ • 건축연면적 : 15,100㎡ • 지상층면적 : 3,720㎡ • 건폐율 : 21.28% • 용적률 : 41.66%
지상1층	1,900㎡	
지하1층	5,600㎡	
지하2층	5,780㎡	
합	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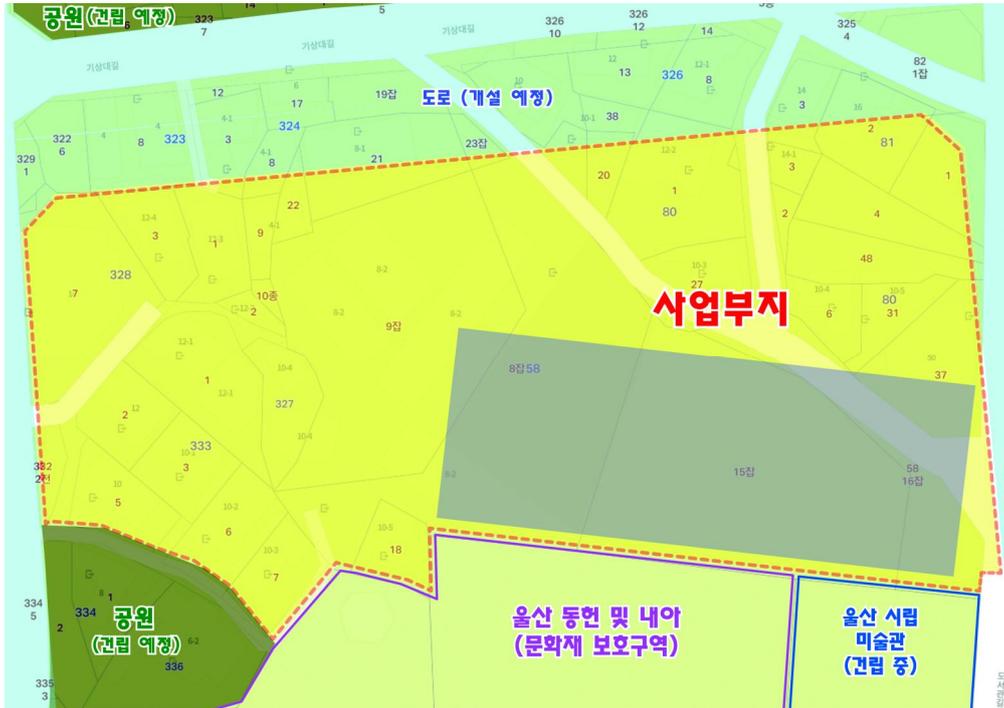
4. 시설배치 검토

- 사업부지의 북쪽은 성벽이 있던 곳으로 추후 복원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도서관은 가급적 부지의 남쪽에 도서관을 배치함. 이 경우 도서관은 사업부지 남쪽에 동서로 길쭉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음
- 울산시립미술관과의 기능 연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가급적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인접하여 배치함
-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도서관의 남쪽 면이 <울산동헌 및 내아> 및 <울산시립미술관>의 북쪽 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이 경우 도서관의 향이 정남이 아니라 남서향이 됨

<그림 3-6>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위치



<그림 3-7> 문화예술전문도서관 배치계획



제4 기본계획

1. 도입시설 검토

-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도입시설을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설문조사,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특성,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 및 보완 측면에서 검토하여 확정함

1) 도서관법 검토

-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되며,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열람실 면적이 165㎡,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열람실은 전문자료실 내 열람공간을 의미함. 일반 공공도서관의 학습용 열람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발간함. 본 매뉴얼에는 전문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의 공간구분과 각 공간에 해당되는 도입시설이 제시되어 있음
-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니지만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공간구분과 각 공간에 해당되는 도입시설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일반 공공도서관은 자료이용 부문, 문화교육 부문, 업무관리 부문, 공용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각 공간마다 다음과 같은 시설을 도입하여 건립할 수 있음

<표 3-11> 일반 공공도서관의 도입시설 및 공간계획

구분	도입시설	공간계획
자료 이용 부문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고문서자료실, 향토자료실, 주제별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내부구조는 요철이 없는 단순한 형으로 계획하며 중앙부는 낮은 서가를 배치하여 자료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이야기방	1층의 출입구에 가까운 남향에 접한 위치. 관리상으로 사무실과 서구에 가까운 곳이 편리함
	디지털자료실	소음 증을 최대한 고려하여 독립된 실로 구성
문화 교육 부문	전시실, 다목적실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별실로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중·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입구의 현관/홀을 이용하도록 배치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입구나 출입구 홀의 가까운 곳에 배치(이용자들의 인지도 고려)
	학습실, 연구실	이용좌석공간 내의 환경이 좋은 곳이나 자료실과 가깝고 출입구나 이동자료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나 구석에 코너로 구성
업무 관리 부문	보존서고실, 귀중보존서고실, 이동도서관지원실	-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준비실, 탈의실, 숙직실, 자원봉사자실	-
	전산실, 방제실, 창고	-
공용 부문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실	도서관 관리 및 보안을 위해 한 개의 출입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
기타 부문	기계실/전기실, 창고, 주차장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3) 설문조사 결과 검토

- 설문조사에서 도입시설로 열람실, 디지털자료실(정보검색실), 편의시설(휴게실), 시청각실과 강당, 전시실(소규모 전시코너), 세미나실에 대해 의견을 물음. 설문조사 결과, 열람실, 디지털자료실(정보검색실), 편의시설, 시청각실과 강당, 전시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높게 나옴
- 반면, 세미나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옴. 기타의견으로 카페, 스터디룸, 유아체험실, 주차장, 학습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설문조사에서 열람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특성상 (학습용)열람실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음. 열람실은 울산광역시 관내 일반 공공도서관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4) 문화예술전문관의 특성 및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 및 보완 검토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특성상 일반자료실이 아닌 문화예술자료실의 도입이 필요함. 아울러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아카이브센터<지역 예술가 연구·창작 활동 지원 기능>와 아카이브실<지역 예술가 활동기록 기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어린이·유아자료실을 대신하여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해 보는 창작·체험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 및 보완 측면에서 울산시립미술관에 부족한 주차장을 본 도서관에 많이 설치해야 함. 아울러 울산시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실내 전시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시립미술관에 없는 야외 전시공간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울산시립미술관에 부족한 예술관련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

로 위에서도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특성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 문화예술자료실, 아카이브실, 아카이브센터가 설치되어야 함

5) 적정 도입시설 도출

- 위에 논의된 사항을 본 도서관의 도입시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자료이용 부문 : 문화예술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아카이브실
 - 문화교육 부문 : 아카이브센터, 창작·체험실, 시네마테크(영상상영 및 다목적 강당)
 - 업무관리 부문 : 사무실, 회의실, 보존서고
 - 공용 부문 : 로비(오픈 갤러리), 북카페, 화장실, 계단·엘리베이터
 - 기타 부문 : 중앙통제실, 전기·기계·비상발전실, 주차장, 헬룸,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표 3-12> 문화예술전문도서관 도입시설

구분	도입시설
자료이용 부문	문화예술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아카이브실
문화교육 부문	아카이브센터, 창작·체험실, 시네마테크(영상상영 및 다목적 강당)
업무관리 부문	사무실, 회의실, 보존서고
공용 부문	로비(오픈 갤러리), 북카페, 화장실, 계단·엘리베이터
기타 부문	중앙통제실, 전기·기계·비상발전실, 헬룸, 주차장,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2. 시설계획

1) 시설 면적배분

- 문화체육관광부(2013)가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 공공도서관의 지역중앙관 면적배분 기준은 자료이용 부문 35-45%, 문화교육 부문 10-16%, 업무관리 부문 8-15%, 공용 부문 25-30%, 기타 부문 6-8%임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는 지역중앙관과 지역분관으로 구분하여 면적배분 기준을 제시함. 본 도서관은 구(區)를 넘어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중앙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차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울산광역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문화교육 부문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문화교육 부문의 면적배분을 늘려야 함. 일반 공공도서관의 지역중앙관 면적배분 기준에서 자료이용 부문 면적배분 기준을 줄이고, 문화교육 부문의 면적배분 기준을 늘림. 다른 부문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지역중앙관 면적배분 기준을 적용함
- 기타 부문에서 주차장과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지역중앙관 면적배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면적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면적을 산출함
 - 주차장은 울산시립미술관의 부족한 주차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에 넓게 배치함
 - 지하회랑은 도서관과 미술관을 연계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결통로로 그림 작품 등을 연결통로의 벽면에 설치하여 회랑으로 사용하며, 응급 시에는 비상구로도 활용함
- 최종적으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별도 부분 제외)은 자료이용 부문 15-25%, 문화교육 부문 30-36%, 업무관리 부문 8-15%, 공용 부문 25-30%, 기타 부문 6-8%임

<표 3-13> 문화예술전문도서관 도입시설 면적 배분범위

구분	도입시설	지역중앙관 면적배분 기준(%)	면적배분 기준 조정(%)	면적(㎡) 범위
자료 이용 부문	문화예술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아카이브실	35-45	15-25	857-1,429
문화 교육 부문	아카이브센터, 창작·체험실, 시네 마테크(영상상영 및 다목적 강 당), 전시실	10-16	30-36	1,715-2,057
업무 관리 부문	사무실, 회의실, 보존서고	8-15	8-15	457-857
공용 부문	로비(오픈 갤러리), 북카페, 화장 실, 계단·엘리베이터	25-30	25-30	1,429-1,725
기타 부문	중앙통제실, 전기·기계·비상발전 실, 헬룸	6-8	6-8	343-457
소계		100	100	5,715
별도 부분	주차장, 지하철량(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	-	9,385
합계		-	-	15,100

(1) 자료이용 부문 면적 산출

- 위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
축적 고려를 했을 경우, 별도 부분을 제외한 면적 5,715㎡의 21.26%를 배분
받아 총 1,215㎡를 자료이용 부문으로 활용함
- 일반 공공도서관의 경우,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실의 좌석 수와
기본장서 권수를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자료실의 좌석 수를 근거로 일반자
료실의 면적을 산출함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를 말함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실의 좌석 수, 기
서 권수, 문화예술자료실의 면적을 구할 수 없음. 본 도서관은 이용객 수를
근거로 좌석 수를 도출 한 후, 장서 권수와 문화예술자료실의 면적을 산출함
-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자료이용 부분의 면적을
산출함
 - 문화체육관광부(2019)가 발간한 「2019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
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
자는 5,501,581명이고, 자료실 이용자는 4,075,378명으로 74.08%의 비율을
보임
 - 본 도서관의 연간 이용객 수는 741,487명으로 추정되며, 365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 2,031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산됨. 이 중에 74.08%의 비율에
해당하는 1,505명이 일일 평균 자료실 이용객 수로 추정됨. 자료실 이용시
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할 때, 매시간당 150명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 이에 문화예술자료실의 좌석 수는 최소 150석 이상을 갖
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유분을 고려하여 170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울산광역시 관내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5,501,581명 중에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는 403,816명으로 7.34%의 비율을 보임. 본 도서관의 연간 이용객
수는 741,487명으로 추정되며, 365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 2,031명이 방문
하는 것으로 계산됨. 이 중에 7.34%의 비율에 해당하는 149명이 일일 평
균 디지털자료실을 이용객 수로 추정됨. 개방시간을 9시간, 그리고 컴퓨터
및 시청각장비 이용시간을 3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3회 회전이 가능하므
로 동시에 50명이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디지털자
료실의 좌석 수는 50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아카이브실은 유사 시설의 면적을 참조하여 공급 면적을 정함

<표 3-14> 자료이용 부문 면적 산출

구분	면적 (㎡)	비율 (%)	산출내역	산출근거
문화예술 자료실	900	7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면적 : 170석 × 2.3㎡/석 = 391㎡ 영역비율로 면적 배분 : 서가 44% → 391㎡, 안내 12% → 106㎡ / 면적 합계가 888㎡로 도출되나 여유분 고려 900㎡ 공급 장서 권수 : 391㎡ × 180권/㎡ = 70,380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면적기준 : 2.3㎡/석 영역비율 : 좌석 44%, 서가 44%, 안내 12% 서가 면적기준 : 6단 양면서 가 180권/㎡
디지털 자료실	115	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자료 좌석 면적 : 10석 × 3.5㎡/석 = 35㎡ 컴퓨터 단말기 좌석 면적 : 40석 × 2㎡/석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자료 좌석 면적기준 : 3.5㎡/석 컴퓨터 단말기 좌석 면적기준 : 2㎡/석
아카이브실	200	16.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시설의 아카이브실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현대미술관 : 양산시립박물관 : 187.38㎡
합계	1,215	100		

○ 자료이용 부문의 면적은 문화예술자료실 900㎡, 디지털자료실 115㎡, 아카이브실 200㎡로 산출됨. 아울러 문화예술자료실에 장서를 최대 70,380권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됨

(2) 문화교육 부문 면적 산출

○ 위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축적 고려를 했을 경우, 별도 부분을 제외한 면적 5,715㎡의 34.91%를 배분받아 총 1,995㎡를 문화교육 부문으로 활용함

○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문화교육 부문의 면적을 산출함

- 아카이브센터는 지역 예술가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출함
- 창작·체험실은 초등학교 1개 학급 기준인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출함
- 시네마테크(영상상영 및 다목적 강당)는 타 지역 유사규모 공공도서관 내

- 시청각실 수용규모(양산도서관 100석, 강화도서관 72석 등)를 기준으로 함
- 전시실은 울산시립미술관 내 전시실 규모와 다른 규모로 제공함

<표 3-15> 문화교육 부문 면적 산출

구분	면적 (㎡)	비율 (%)	산출내역	산출근거
아카이브센터	840	42.11	• 면적 : 300인 × 2.8㎡/인 = 840㎡	• 지역 예술가 동시 300인 사용 • 연구실 면적기준 : 2.8㎡/인
창작·체험실	165	8.27	• 50인 사용으로 가정 • 면적 : 50인 × 2.5㎡/인 = 125㎡ • 여분 및 건축적 고려 165㎡ 공급	• 어린이 동시 30인(초등학교 1개 학급 기준) 이상 사용 • 청소년시설 1인당 소요면적 : 2.5㎡/인
시네마테크	210	10.53	• 130인 사용으로 가정 • 면적 : 130인 × 1.4㎡/인 = 182㎡ • 여분 및 건축적 고려 210㎡ 공급	• 울산시민 100인 이상 사용 • 시청각실 및 강당 1인당 소요 면적 : 1.4㎡/인
전시실	780	39.10	• 미술관에 부족한 중대규모 전시실 공급 필요, 도서관의 건축적 고려 : 780㎡ 공급	• 울산시립미술관 : 대전시설 1,968㎡, 다목적전시실 307㎡, 소전시실 392㎡
합계	1,995	100		

- 문화교육 부문의 면적은 아카이브센터 840㎡, 창작·체험실 165㎡, 시네마테크 200㎡, 전시실 780㎡로 산출됨

(3) 업무관리 부문 면적 산출

- 위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축적 고려를 했을 경우, 별도 부분을 제외한 면적 5,715㎡의 11.81%를 배분받아 총 675㎡를 업무관리 부문으로 활용함
- 업무관리 부문의 면적은 20명이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20명에 직원 1인당 소요면적을 곱하여 산출함. 사무실 150㎡, 회의실 90㎡, 시네마테크 200㎡, 보존서고 435㎡를 공급함

<표 3-16> 업무관리 부문 면적 산출

구분	면적 (㎡)	비율 (%)	산출내역	산출근거
사무실	150	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근무 • 면적 : 20인 × 7-9㎡/인 = 140-180㎡ • 건축적 고려 : 150㎡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인당 소요면적 : 7-9㎡/인
회의실	90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근무 • 면적 : 20인 × 2.5㎡/인 = 50㎡ • 여분 및 건축적 고려 90㎡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인당 소요면적 : 2.5㎡/인
보존서고	435	6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15㎡의 5-10%는 286-572㎡임 • 건축적 고려 : 435㎡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부분 제외 면적의 5-10% 확보
합계	675	100		

(4) 공용 부문 면적 산출

- 위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축적 고려를 했을 경우, 별도 부분을 제외한 면적 5,715㎡의 25.20%를 배분 받아 총 1,440㎡를 공용 부문으로 활용함

<표 3-17> 공용 부문 면적 산출

구분	면적 (㎡)	비율 (%)	산출내역	산출근거
로비 (오픈 갤러리)	890	6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적 고려 : 890㎡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부분 제외 도서관 면적 5,715㎡의 25-30%
북카페	100	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적 고려 : 100㎡ 공급 	
화장실	90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설치기준 시행령 : 층별 최소 공급면적 33㎡ 이상 	
계단/엘리베이터	360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상 계단/엘리베이터 기준 준수 	
합계	1,440	100		

-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별도 부분을 제외한 도서관 면적 5,715㎡의 25-30%에 해당하는 면적 1,429-1,725㎡에서 건축적 고려를 통해 산출함. 공용 부분의 면적은 로비(오픈 갤러리) 890㎡, 북카페 100㎡, 화장실 90㎡, 계단/엘리베이터 300㎡로 산출됨

(5) 기타 부문 면적 산출

- 위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축적 고려를 했을 경우, 별도 부분을 제외한 면적 5,715㎡의 6.82%를 배분받아 총 390㎡를 기타 부문으로 활용함
- 별도 부분은 주차장 9,345㎡와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40㎡로 구성됨

<표 3-18> 기타 부문 면적 산출

구분	면적 (㎡)	비율 (%)	산출내역	산출근거
중앙통제실	55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5,715㎡ × 6-8% = 343-457㎡ • 건축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부분 제외 도서관 면적 5,715㎡의 6-8%
전기/기계/비상발전실	220	56.41		
헬룸	115	29.49		
합계	390	100		
주차장	9,345	9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00㎡ ÷ 200㎡ = 76대(이상) • 울산시립미술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사업부지 지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 지하주차장에 332대 주차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시설면적 200㎡ 당 1대
지하회랑	40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울산시립미술관의 최단거리 연결통로 확보 	-
합계	9,385	100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도입시설 면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9> 문화예술전문도서관 도입시설 면적

구분	도입시설	면적(㎡)	비율(%)
자료이용 부문	문화예술자료실	900	15.75
	디지털자료실	115	2.01
	아카이브실	200	3.50
	소계	1,215	21.26
문화교육 부문	아카이브센터	840	14.70
	창작·체험실	165	2.89
	시네마테크(영상상영 및 다목적 강당)	210	3.67
	전시실	780	13.65
	소계	1,995	34.91
업무관리 부문	사무실	150	2.62
	회의실	90	1.57
	보존서고	435	7.61
	소계	675	11.81
공용 부문	로비(오픈 갤러리)	890	15.57
	복카페,	100	1.75
	화장실,	90	1.57
	계단·엘리베이터	360	6.30
	소계	1,440	25.20
기타 부문 (별도 부분 제외)	중앙통제실	55	0.96
	전기·기계·비상발전실	220	3.85
	웬룸	115	2.01
	소계	390	6.82
합계		5,715	100
별도 부분	주차장	9,345	99.57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40	0.43
	소계	9,385	100
총계		15,100	-

2) 층별 시설 배치

○ 층별로 다음과 같이 기능을 부여하여 도입시설을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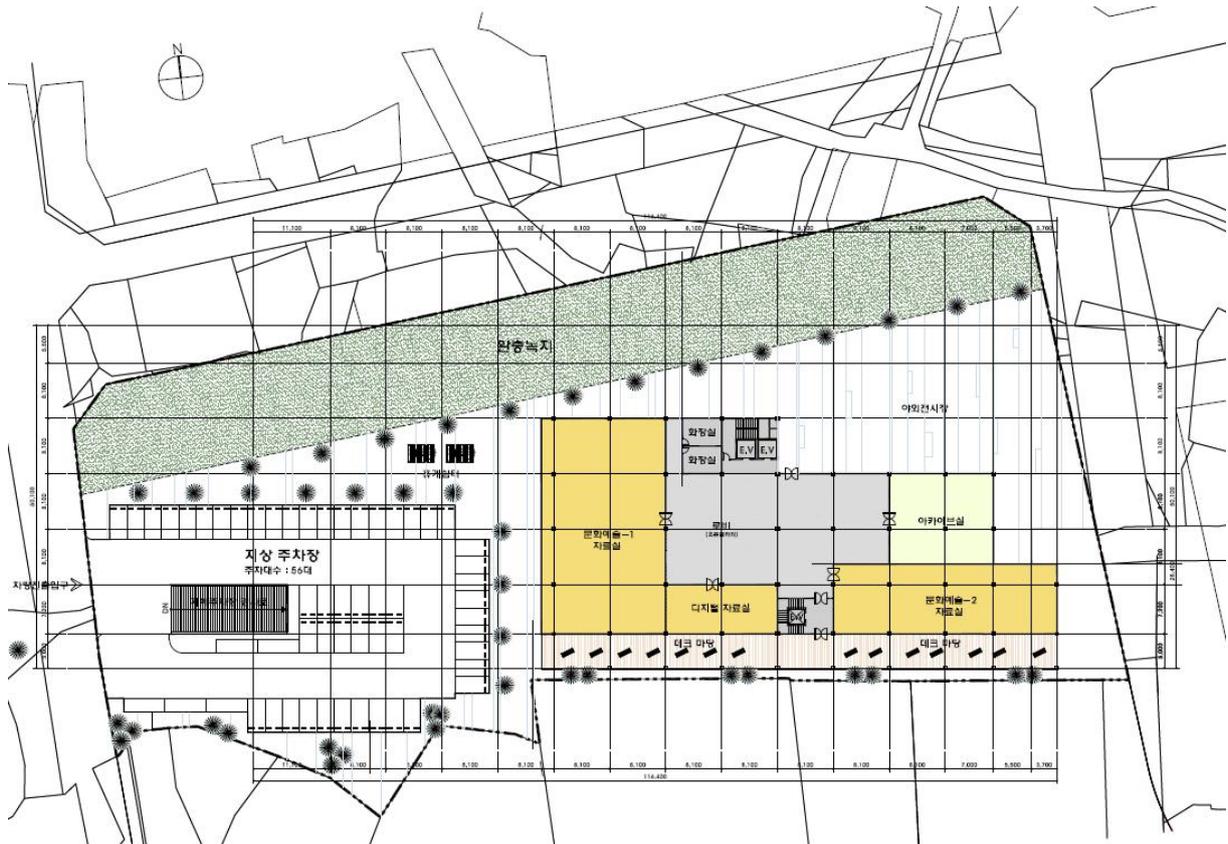
<표 3-20>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층별 시설 배치

층	층별 기능	층별 면적(㎡)	공간구분	도입시설	면적(㎡)
지 상 2 층	활 동 기 능	1,820	문 화 교 육 부 문	아카이브1센터	580
				아카이브2센터	260
				창작·체험실	165
			업 무 관 리 부 문	사무실	150
				회의실	90
				로비(오픈 갤러리)	340
			공 용 부 문	북카페	100
				화장실	45
				계단·엘리베이터1	40
계단·엘리베이터2	50				
지 상 1 층	자 료 보 관 · 이 용 기 능	1,900	자 료 이 용 부 문	문화예술1자료실	570
				문화예술2자료실	330
				디지털자료실	115
				아카이브실	200
			공 용 부 문	로비(오픈 갤러리/안내데스크 포함))	550
				화장실	45
				계단·엘리베이터1	40
				계단·엘리베이터2	50
지 하 1 층	보 조 기 능	5,600	문화교육 부문	시네마테크	210
			업무관리 부문	보존서고	435
			공 용 부 문	계단·엘리베이터1	40
				계단·엘리베이터2	50
			기 타 부 문	중앙통제실	55
				웬룸1	30
				웬룸2	55
				(지하)주차장	4,725
지 하 2 층	연 계 기 능	5,780	문화교육 부문	전시실	780
			공 용 부 문	계단·엘리베이터1	40
				계단·엘리베이터2	50
			기 타 부 문	전기·기계·비상발전실	220
				웬룸	30
				(지하)주차장	4,620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40
합계		15,100			15,100

(1) 지상 1층 : 자료보관·이용 기능

- 지상 1층은 자료보관·이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공용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자료이용 부분으로 공간을 구성함
- 북쪽과 남쪽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건물 한가운데 로비를 넓게 두어 개방감을 주고, 각 실마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또한 오픈 갤러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자료실은 문화예술자료를 크게 미술 분야와 음악 및 공연·영상 분야로 구분하여 1실과 2실로 구분하여 보관함. 디지털자료실과 지역 예술가의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실도 설치함

<그림 3-8>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상 1층 평면도



- 도서관 북쪽에 성벽이 있던 자리에는 완충녹지로 조성하고, 도서관 남쪽에는 도서관과 접하여 데크를 두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 도서관 동쪽에는 미술관에 없는 야외전시장을 설치하고, 도서관 서쪽에는 지상 주차장을 조성하여 56대의 주차면을 확보함. 서쪽에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주요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배려함

<그림 3-9>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상 1층 주요 이미지



문화예술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아카이브실



로비(오픈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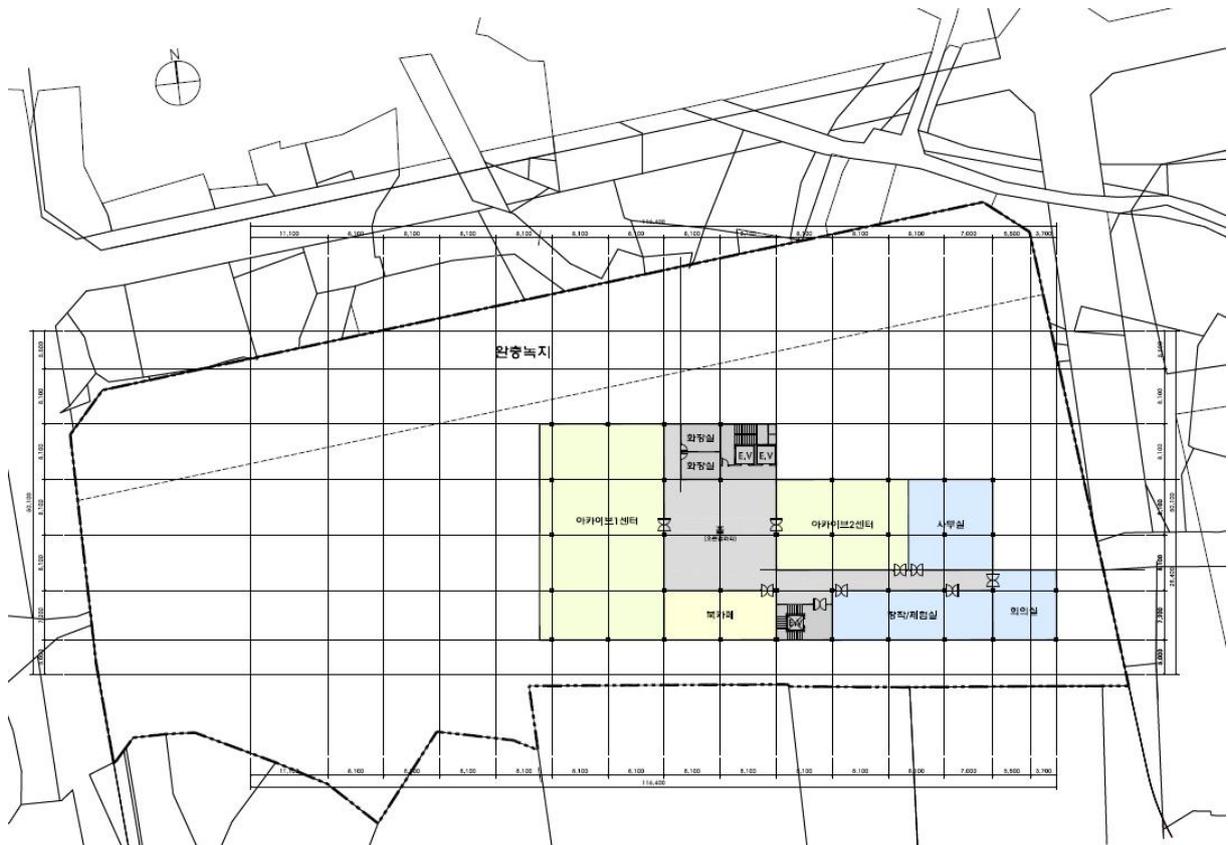
<그림 3-10>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야외전시장 주요 이미지



(2) 지상 2층 : 활동 기능

- 지상 2층은 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성함. 업무관리 부문과 공용 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교육 부문으로 공간을 구성함
- 지상 1층과 마찬가지로 건물 한가운데 로비를 넓게 두어 개방감을 주고, 각 실마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역시 지상 1층과 마찬가지로 오픈 갤러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교육 부문은 서쪽에 업무관리 부문은 동쪽에 배치하여 공간의 혼재를 차단함
- 아카이브센터도 문화예술자료실과 마찬가지로 1센터와 2센터를 두어 지역 예술가들이 자기 분야에 적합한 센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11>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상 2층 평면도



<그림 3-12>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상 2층 주요 이미지



아이브센터



장작 · 체험실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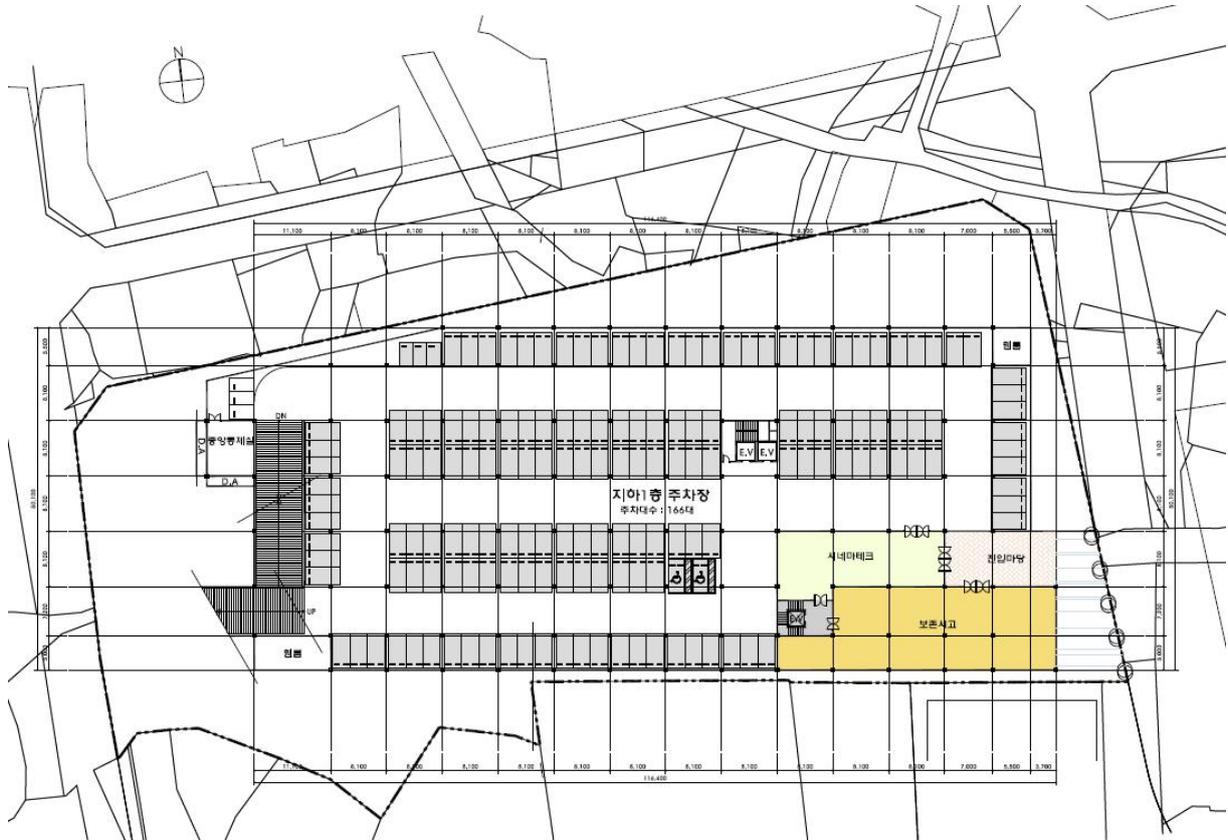


로비(오픈 갤러리)

(3) 지아 1층 : 보조 기능

- 지하 1층은 지상층의 자료보관·이용 기능과 활동 기능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문화예술자료의 보관·이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보존서고가 도입되며, 문화교육 부문에 속하는 시네마테크가 설치됨. 시네마테크는 영상상영이 가능하면서도 강당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시네마테크와 보존서고는 동쪽에 배치하고, 지하 주차장은 서쪽에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지음. 지하 주차장에 16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울산시립미술관에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함

<그림 3-13>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하 1층 평면도



<그림 3-14>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하 1층 주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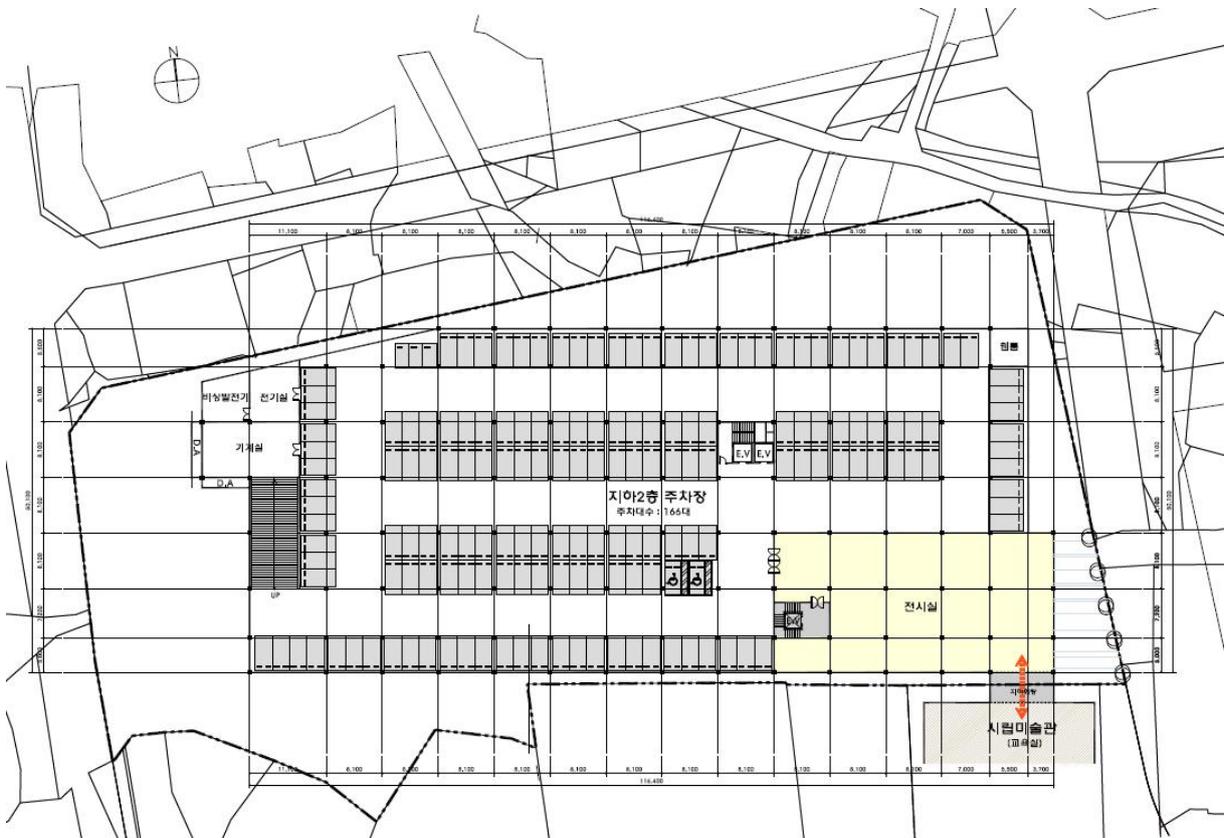
시네마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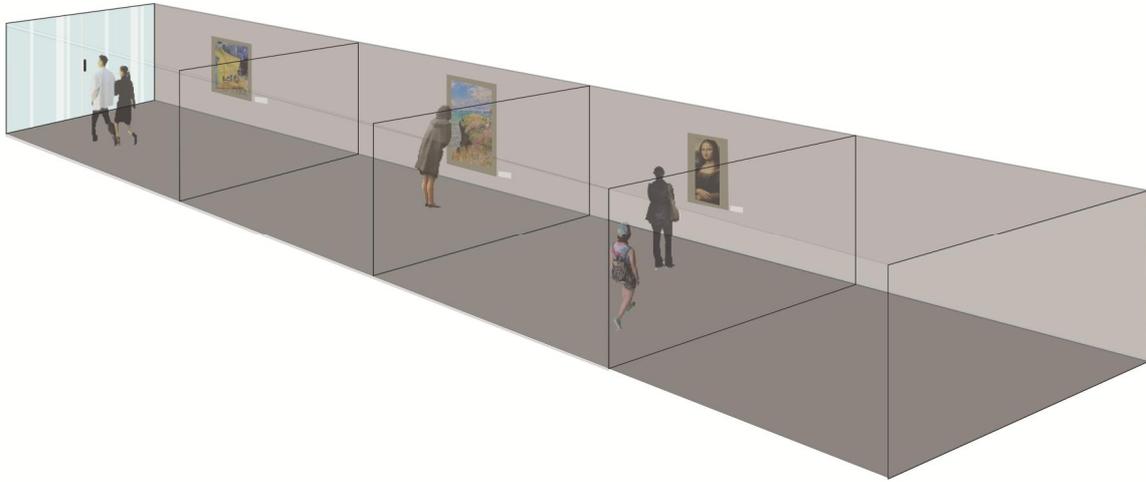
보존서고

(4) 지아 2층 : 연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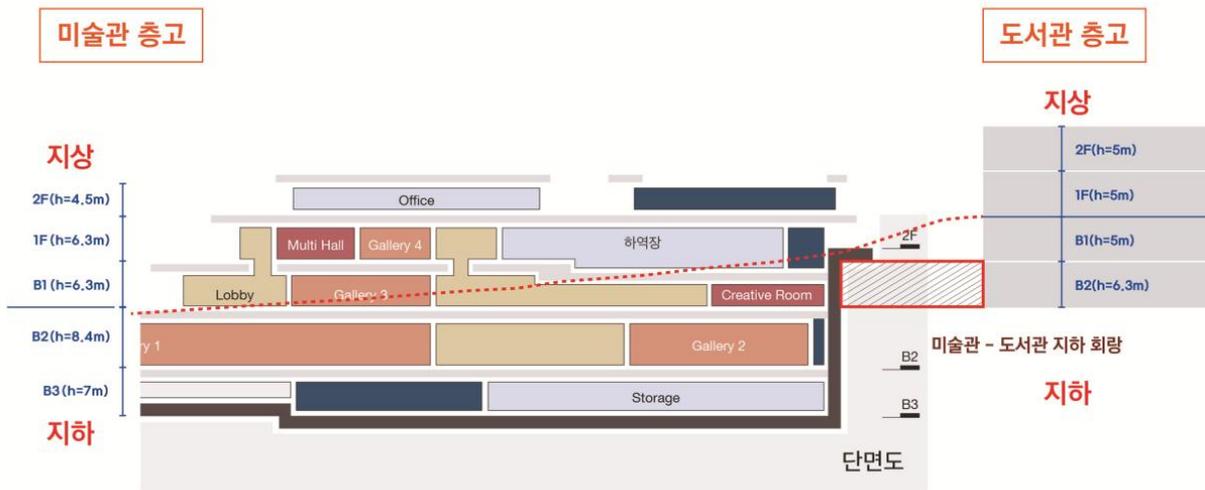
- 지하 2층은 울산시립미술관과 연계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울산시립미술관 지하1층과 통로로 연결하여 두 건축물을 외부로 통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연결통로는 지하회랑과 응급 시 비상구로도 활용함
-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지대가 높아서 도서관 지하2층과 미술관 지하1층을 연결하여 통로를 조성함
- 지하 2층에는 울산시립미술관에 없는 중대규모의 전시실을 설치하여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와 보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함
- 전시실은 동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서쪽에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지음. 지하 주차장에 지상 1층과 마찬가지로 16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울산시립미술관에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함

<그림 3-15>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지하 2층 평면도

<그림 3-16>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개념도



<그림 3-17>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횡단면도



<그림 3-18> 지하회랑(미술관-도서관 연결통로) 평면도



3) 조감도

<그림 3-19>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조감도